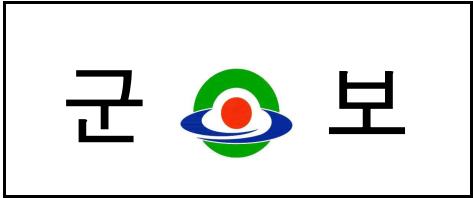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16호 2026. 7. 2.(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예천군 상금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6-65호)

공 고

- 예천군 고문번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 공고 제2026-972호)
-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고 제2026-974호)
- 공인 신조 및 등록 공고 (예천군의회 공고 제2026-1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 상금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천군 상금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7. 2.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예천군 상금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농촌지역의 생활권 단위별 공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무질서하게 확산된 주거지 등을 정비하고, 생활편의시설 및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3. 위 치: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일원

4. 사 업 비: (당초) 9,600백만원(국비 4,800 도비 1,440, 군비 3,360)

(변경) 9,441백만원(국비 4,721 도비 1,416, 군비 3,304)

5. 사업기간: (당초) 2023년~2027년(5년간)

(변경) 2023년~2028년(6년간)

6. 주요 사업내용

○ 정비사업 : (당초) 축사(돈사) 1개소, 장기방치건축물(폐정미소) 1개소, 빈집 3개소

(변경) 축사(돈사) 1개소, 빈집 3개소

○ 재생사업 : (당초)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귀농귀촌 체험주택, 귀농귀촌지원센터, 영농체험시설), 어울림마당 조성

(변경)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지원단지(귀농귀촌 체험주

택, 귀농귀촌지원센터, 영농체험시설)

○ 역량강화(S/W) : 주민협정 워크숍, 주민참여 활성화 교육, 거버넌스 지원 등

7. 시행자 : 예천군수

8.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6. 7. 2. ~ 7. 17. (15일간)
- 장 소 : 예천군청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9. 기타 문의사항

※ 기타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농촌개발팀 ☎ 054-650-7325)로 문의 바랍니다.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천군 고문변호사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자문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체계적인 법무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임명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위촉 제한하도록 함.

나. 이해충돌행위 예방 근거 마련(안 제4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고문변호사 직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

다. 고문변호사 월 자문수당 금액 기준 완화(안 제8조)

- (당초) 월 20만원 → (변경)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변호사법」 제90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 6월 중 실시 예정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행복과 의뢰 예정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수가 위촉하는 예천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예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고,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관련 외부기관 추천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변호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 및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4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군수에게 알리고 소송 수임 및 법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 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군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3. 소송사건 및 법률 자문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법률 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위촉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
4. 법률 자문 또는 소송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 수행 현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천군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에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건당 1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소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
2. 고소·고발의 경우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된 것
3.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된 것
4. 민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 것

③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부서장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소송비용확정 결정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서장이 소송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축 장

변 호 사 ○○○
(법무법인 △△ ○○○)

귀하를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고문변호

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청 령 서 약 서

본인은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천군 고문변호사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예천군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 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서 약 자 : 변호사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 건 실 적 부(제7조 관련)

부서명	의뢰일	문 의 내 용	회신일	회 신 내 용	자 문 변호사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본인은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천군 고문변호사로서 다음 사항을 예천군 누리집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위촉기간)
2. 소송사건 수행 현황

년 월 일

동 의 자 : 변호사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직무관련 변호사 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직급 :		성명 :					
	담당업무								
사건번호	민사			고소·고발			공소		
	법원	접수일	사건번호	경찰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검찰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법원	접수일
지원금액	금	원	지원일시						
사건개요									
구비서류	☐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부서장 □□□ (인) 예천군수 귀하									

【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이민원 발생 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근거와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상담 종료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민원응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악성민원’ 용어를 ‘특이민원’으로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 상위법령 및 행정용어 정비에 따라 ‘악성민원’을 ‘특이민원’으로 변경

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법적 대응 지원 범위 확대(안 제7조제1항제4호)

- 손해배상 대응 중심의 지원을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등 전반적인 법적 대응 지원으로 확대

다. 특이민원 피해 치유를 위한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제8호)

-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근거 규정

라. 지원 경비 지급 및 중복 지원 방지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 지원 경비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 근거 마련

마.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출입제한 조치 신설(안 제8조의2)

- 폭언·폭행, 반복·중복 민원 등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바. 민원상담 권장시간 및 상담 종결 기준 신설(안 제8조의3)

-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상담 종결 기준 규정

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및 지원체계 신설
(안 제8조의4)

-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근거 마련

아. 지원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0조제1항)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서식 마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2027년 본예산 반영 예정

라.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 심사 완료

마. 입법예고 : 7월 중 추진 예정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행정문화복지국 주민행복과 의뢰 예정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와 이를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이민원”이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청원경찰

다. 공무원직근로자

라. 기간제근로자

3. “안전시설”이란 특이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특이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시간적으로 급박한 경우 부서장의 지휘 하에 선조치하고 후보고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이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특이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
2. 심리상담
3.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일시적인 휴식시간·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직원보호 특별휴가. 다만, 특별휴가는 특이민원으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즉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일부터 익일 이내로 정한다.
7.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보호 장비 도입
2. 비상벨 및 비상연락망 구비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의 구조

보강 조치

5. 기타 군수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직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 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책상에 폭언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재

3. 기타 군수가 특이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의2(특이민원에 대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의3(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상담(통화·면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제8조의4(위법 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전문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즉각 분리 및 특이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공무원 보호정책을 마련한다.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예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1.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직원 보호 등을 위한 지원 방안 결정
2. 제7조 및 제8조 관련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
3.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이 제안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후생복지팀장, 총무팀장, 행정팀장, 예산팀장

2.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후생복지업무 담당자로 임명한다.

⑥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발 생 일			부 서 명	
피해 공무원	직급(위)		연 락 처	
	성 명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 ○ ○			
공무원 피해 내용 (구체적 작성)	○ ○ ○			
신청 내용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소송지원 ☐			
	은행명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및 문책 조치에 동의합니다. ☐			
증빙 자료	○ 진단서 ○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피해 확인 (부서장 확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공인 신조 및 등록 공고

예천군의회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공인 신조 및 등록(교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 및 등록사유: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신조
2. 사용개시일: 2026. 7. 3.
3. 공인내역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신 조	예천군의회 의 회 운 영 위 원 장 인	훈민정음체 2.1cm × 2.1cm (정사각형)	
신 조	예천군의회 기 획 행 정 위 원 장 인	훈민정음체 2.1cm × 2.1cm (정사각형)	
신 조	예천군의회 경 제 건 설 위 원 장 인	훈민정음체 2.1cm × 2.1cm (정사각형)	

2026. 7. 1.

예 천 군 의 회 의 장